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강경자 외 1175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외 25인

(별지기재와 같음)

본안사건 2018헌마1108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동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신청취지

1. 가.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부칙 제1항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08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동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나.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발행한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부합되는 경과조치(규율)를 명한다.”

다.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발행하고 2019년도 2학기에 사용할 예정인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5-2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부칙 제2항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08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동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의 개요

가. 교육부장관은 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중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교육과정 중 [6사04-05] [6사05-01] 부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중 [9역 12-01] [9역12-03] 부분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중 [10한사04-02] [10한사04-04] [10한사04-06] 부분과 위 【별책 7】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6학년군),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및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부분을 발표하였고, 2019. 3. 1. 위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국정교과서 초판을 발행한 바 있다.

신청인들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직 고등학교 교장, 예비역 장군, 외교관, 교수 등 일반 국민들,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유재중, 이명수, 이진복, 김기선, 김선동, 김종석, 김현아, 박완수, 박인숙,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엄용수, 이만희, 이종명, 전희경, 윤상직, 윤영석, 이종배 등이다.

신청인들은 2018. 11. 18. 위 교육부 고시 중 사회 및 한국사 부분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일반적 인격발현권,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 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았고,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하고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 자유민주주의 원리 등이 회복할 수 없게 침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위 교육부고시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국정교과서의 사용중지 및 사용금지와 위 교육부고시 부칙 제1항, 제2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본안사건의 심판청구의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제군주인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에는 유엔총회의 결의, 선거감시 등의 지원이 있었고, 정부수립 후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의 대상자인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에게, 국민주권국가의 건립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올바로 교육하여야 마땅하다.

(2)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이고, 따라서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법원칙이며, 모든 국민생활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이는 우리 학계에서 이론이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사건, 국가안전기획부법사건, 탄핵사건, 통진당해산사건, 제주4·3사건, 남북교류협력법사건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헌법의 원리를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의 대상

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재산, 평등,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마땅하다.

(3) 그런데, 교육부장관의 위 고시는 교육행정권을 남용하여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내용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헌법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4) 그리하여 우리 헌법의 지도원리가 아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을 대상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위와 같은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로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교사의 학생교육권도 침해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원인 주권의 보유자인 일반국민으로서도 마땅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

가.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57조, 제65조)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두 심판절차 이외에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¹⁾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가 있을 때에 허용된다.²⁾

그리고 가처분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³⁾

나. 국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과서의 위헌성

교육부가 2019. 3. 1. 발행한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국정교과서는 위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위 국정교과서는 제1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제2단원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제3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등 3단원으로 구성되

1) 현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4-385

2) 현재 2002. 4. 25. 2002헌사129, 판례집 14-1, 433, 439

3) 현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271; 2006. 2. 23. 2005헌사754, 판례집 18-1상, 339, 345-346

어 있다. 단원별로 위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원의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부분

(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기술 부분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기술하여 북한정권의 수립과 동렬로 기술하고 있다.

제헌 국회 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전통을 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1948년 9월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사회과 부도 88쪽



4)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군주주

4)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과서 6-1 64면

권국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상해임시 정부의 헌장의 주요 핵심내용인 국민주권, 자유, 평등, 재산권 등을 제헌헌법에 담아 그 법통을 계승한 국가를 수립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것인데, 국정교과서에는 이 점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전장의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기술은 주로 항일운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임).

위에서 거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기술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수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나라’의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구나 ‘역사적 의미’에 관한 기술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는 우리 헌법전문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다)을 ‘전통’ 계승으로, 어법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정권 수립을 염두에 둔 기술 보인다.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상 국가의 정체성, 계속성 및 정통성에 위반되는 기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그 역사적 의미를 ‘독립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의 수립에 대하여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즉, 대한제국-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법통이 이어졌다는 국가의 정통성, 계속성과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채택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계적으로 승인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역사적,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도 위반될 수 있다.

(나) 한반도의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 유엔의 역할 기술 부분

한반도의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유엔이 기여한 특별한 역할에 대하여,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관, 이념, 역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은폐 및 심지어 가공까지 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을 맞이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의 나라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38도선을 그어 남쪽에는 미군을 두고 북쪽에는 소련군을 각각 두어 차지했다.

이후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은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회의했다(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5)

먼저, 이 국정교과서는 61면 이하에서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기술하면서, 8.15 광복 후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모스크바3상회의 5년간 신탁통치 결정 등 외세가 개입(?)하고, 국내에서 김구 등 반대가 있었음에도 유엔의 의한 선거감시 하에 한반도 남쪽에서만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결국 오늘의 분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술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위 61면의 기술을 보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 남쪽에는 미군을 두고 북쪽에는 소련군을 각각 두어 차지했다.”라고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달리 법적 권한 없이 합부로 점령하였다는 듯 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5) 같은 교과서 61면

실제로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전으로 종전하게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의 독립문제도 전후 처리의 일환(미국과 소련군의 주둔도 패전국의 피식민지 국가에 대한 전후 처리로 국제법적 근거가 있음)으로 전승국들 사이에 논의되었고,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 · 선언되었다. 전승국 중 자유진영의 대표인 미국과 영국, 공산진영의 소련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반탁운동 등 강력히 반대(남로당 계열에서 사주를 받아 찬탁운동을 벌인 적도 있었음)를 하였고, 결국 전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통치안은 최종 결렬되었고, 한국(Korea : 한국 전체)의 독립 문제를 당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에 회부되었으며, 유엔총회는 1947. 11. 14.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결의안(Resolution)을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가결하였다.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식하고, 한국은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신속히 독립국가로서 재건되고 점령권력은 철수되어야 함을 굳게 믿으며, i)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 감시와 자문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ii)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임시위원회의 선거감시와 자문 하에 인구비례에 의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거를 늦어도 1948. 5. 31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iii)그 총선 후 가능한 한 곧바로 국회를 소집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iv)정부수립 후 곧바로 국군병력을 구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남·북한지역에서 방위기능을 담당했던 모든 병력을 해산하며,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주둔군이 완전한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v)임시위원회는 한국의 독립성취와 주둔군 철수 계획이 실현되도록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결의하였다.⁶⁾

유엔총회의 인구비례 남북 동시선거는 국제기구의 의결을 소련의 사주를

6) 1947. 11. 14. A/RES/ 112(III)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국제 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연합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한국 임시 위원단을 조직해 한반도로 보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 이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쪽과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쪽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국제 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에 국회 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 선거가 실시되었다. 헌법은 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 국회 의장 이승만에 의해 공포되었다.

7)

받은 북한정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그것이 분단에 이르게 된 제1원인이 되었음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63면과 같이,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은폐, 조작까지 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국제기구인 유엔총회의 결정이고, 동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부한 것을 애써 기술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철수 이유를 들며 기술하고, 소련만이 주체로 하고,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7) 같은 교과서 63면

아울러 1948. 5. 10. 선거 훨씬 전인 1946년 북한 정권 수립하였음에도 1948. 9.에 정권을 수립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위 국정교과서 64면 참조),

탐구 활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 알아보기

- ① 다음 글에서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이승만(1875~1965)

“이제 우리는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둑시 기다리지만 잘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김구(1876~1949)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백 년 계획을 그르칠 자가 있으랴.”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 1948년 2월 10일

- 이승만과 김구의 글에서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이승만

김구

-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마치 남한만의 선거로 인하여 분단되었다는 인상을 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여 그에 분단 책임 전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탐구활동’의 하나로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대비하고 있는데(같은 교과서 65면), 다분히 분단의 책임과 결부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⁸⁾

그리고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의 수립 후인 1948. 12. 12. ‘한국의 독립문제’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수립된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1947. 11. 14. 자 결의안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음,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유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즉,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고(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유엔 임시위원회의 선거 감시와 자문이 가능했던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을 관할하는 정부이고, 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하여진 그 영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거에 의한 정부이며, 따라서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⁹⁾

그렇다면, 유엔이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는 점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 : 현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판례집 13-2, 383, 402

9) 1948. 12. 12. A/RES/195(III)

라 파견된 임시위원회의 선거감시 하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그 수립된 정부를 유엔이 승인한 것이므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당연히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인 직무유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는, '2018년 판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에는 기술되어 있던, "1948년 12월 국제 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성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부분을 삭제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의 중요한 성과와 과정을 가르치지 않게 함으로써 헌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6.25 전쟁'에 관한 기술의 점에 관하여

세계사의 지배적 국제기구이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산파역할을 한 바 있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유엔총회는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였고, 중공군의 개입을 침략이라 간주하고 규탄한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국정교과서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을 대등한 입장에서 애써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의미와 평가가 무시되어 있는 이에 배치되는 기술이다.

아울러 유엔군 참전에 있어 이승만 정부(장면 외무부장관)의 외교적 노력

과 성과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6.25 전쟁은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데 성공한 전쟁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주류인 자유진영에 확고히 자리 잡은 역사적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그 후 우리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외교적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기술이다. 더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전쟁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계속성 등을 상징하는 국호인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표기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이 부분 기술 역시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정치관, 이념, 역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은폐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제2단원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등 부분

(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기술하면서, 다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부가설명을 하고 이어 헌법에 없는 ‘참여’라는 용어를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면 우선, 조선왕조의 군주주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으로 바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기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명확히 언급한 바 없다.

우리 헌법 핵심적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채택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국군은 북한군의 침략에 맞섰으나, 소련에게 무기 공급 등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공격을 이겨 내지 못하고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다.

북한군의 남침(1950. 6~9.)



① 북한군의 38도선 이남 침공
(1950. 6. 25.)



③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북한군과 국제 연합군



② 일본 도쿄에 국제 연합군 사령부 설치(1950. 7. 15.)

국군·국제 연합군의 반격(1950. 9~10. 24.)



④ 국군과 국제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



⑥ 국군 평양 입성 환영 대회
(1950. 10.)



⑤ 서울을 되찾아 종양청에 태극기 게양(1950. 9. 28.)
(1954년 서울 수복 4주년 기념식 때 재현한 모습)

10) 같은 교과서 66면

국제 연합은 북한에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국제 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군을 남한에 파견했다. 국군과 국제 연합군은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사회과 부도 88쪽

중국군의 개입(1950. 10. 19.~1951. 3.)

7 중국군의 참전(1950. 10. 19.)

8 국군과 국제 연합군, 평양 철수(1950. 12. 3.)

전선 고착·휴전(1951. 3.~1953. 7.)

9 국군과 국제 연합군, 서울 다시 찾음(1951. 3. 5.)

10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 체결
(1953. 7. 27.)

11)

11) 같은 교과서 67면

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치, 사회분야에 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역사적 사실로써 당연한 역사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마땅히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법(국민주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과 대한민국 헌법제정, 유엔의 산파역할 언급,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덧붙여,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소개한 화보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대통령 사진과 더불어 게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첫 장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제헌헌법전, 또는 제헌헌법 공포식 사진 등을 화보로 소개하고, 우리 헌법의 제정과정과 ‘국민주권’을 비롯한 그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링컨은 물론 미국에서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칭송받고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지만, 이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인데, 부적절한 화보소개이다. 추측컨대,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소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용 중에 설명하면 족한데, 굳이 첫페이지 소개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게티즈버그 연설을 번역하여 소개한 내용은 실로 놀라울 정도의 왜곡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조작에 가까운 가공으로 되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정상의 연설문의 훠손이라

고 볼 만한 고의적인 왜곡 번역이기 때문이다.

즉,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연설문 원문)

이 부분을 국정교과서는,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연설문 원문을 의미 그대로 보면,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뜻이다.

링컨 대통령의 이 게티즈버그 연설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3년에 전몰자를 추도하면서 한 것이고, 남북전쟁의 결과 흑인의 노예상태는 1865년 수정헌법 제13조가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해방된다. 그리고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평등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이 생기게 된다. 위 연설을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고의적인 가공 내지 조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과서에 소개된,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분도 오역이다.

그 원문은,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¹²⁾인데,

이는, “우리, 살아남은 이에게 남겨진 일은 오히려,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오래도록 고결하게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¹²⁾라는 뜻이다.

남북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며, 특히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것은 흑인을 포함하여 남북전쟁으로 하나로 통합된 미국 전체 국민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인용하면서, ‘헌법전문’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쉽게 풀어 쓴’다는 명목으로 헌법전문을 고쳐서싣고 있는데, 어느 나라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이런 예는 없다. 헌법전문도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

12) 위키피디아 게티즈버그 연설문 번역 참조.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 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 요약



13)

13) 같은 교과서 80면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찾아 써 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 봅시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이어 받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따라서 정의·인도와 동포 사랑으로 겨레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모든 사회의 나쁜 비룩과 옳지 못함을 깨뜨리며,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펼쳐 내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오래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여덟 번에 걸쳐 고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따라서 고친다.

1987년 10월 29일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14)

14) 같은 교과서 81면

이다. 근거 없이 함부로 고쳐 쓸 수 없다. 학생들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교사가 쉽게 설명해 주면 된다. 그것이 교사의 존재이유의 하나다. 이는 헌법훼손이다.

(나) '2.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기술 부분

1) 이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라는 제하에 4.19, 5.18, 6월 항쟁 등을 각각 한 장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저항적 참여를 강조하여 특정 정치관, 저항적 역사관 등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¹⁵⁾ 이는 명백히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3가지를 중심으로만 민주주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제하에)를 기술하면서, 이승만대통령과 그 정부(4.19 부분의 장에서만 언급), 박정희대통령과 그 정부(5.18 부분의 장에서만 언급)의 부정적인 면만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문제점을 공연히 노출하여 기술하고, 이승만대통령 정부(1948-1960)와 박정희 대통령 정부(1961-1979)의 30년간 정치부분의 긍정적인 업적은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극히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검인정교과서로서도 채택될 수 없는 내용을 국정교과서로 편찬하고 있어, 명백히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기술 편찬을 결코 정권교체의 전리품의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내용으로 담을 역사는 밝은 미래를 향해

15) 이는 다분히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개정부분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든 현행헌법에 의한다면 대단히 의문스러운 입장이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좋은 교훈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역사는 되도록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항의식만을 가르치는 국가에는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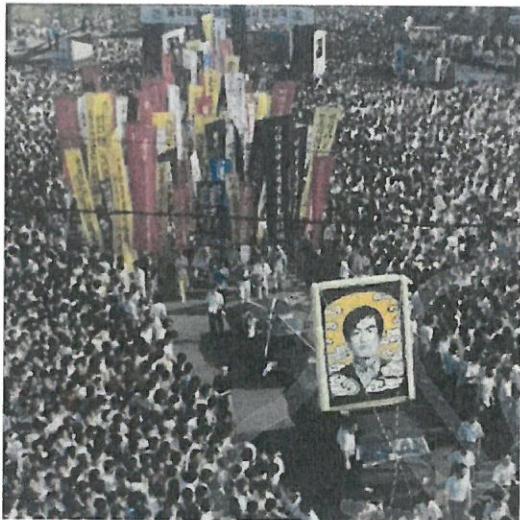


19)

교과서의 2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중 그 하위 단원 1. 민주주의의 발

- 16) 같은 교과서 84면,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자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 17) 같은 교과서 86면,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을까”
- 18) 같은 교과서 93면, 『5.18 민주화 운동의 장면을 보고 느낀 점 표현해 보기』 사진설명: “시위가 계속되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들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 19) 같은 교과서 91면, 사진설명: “당시 희생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 그러나 이 사진은 5.18 관련 사진이 아님이 판명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과 시민 참여 부분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19, 5.18과 6월 항쟁만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에 소개한 자료사진 51장 중 34장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사진으로 되어 있고, 희생된 학생들과 시민들의 죽음에 관한 사진들 제시하여 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탐구활동으로 그 자료사진을 제시하고 느



20)



21)

긴 점을 말하거나 시를 짓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4.19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어린이를 자료화면과 더불어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을까』라는 제하에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죽음을 정치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것인가 심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정부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다. 물론 교육적으로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당연히 문제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 탐구 활동에 인용된 수송초등학교 학생의 ‘시’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중략)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심각하다. 대

20) 같은 교과서 95면, 사진 설명: “6월 민주 항쟁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 열을 추모하려고 모인 사람들”

21) 같은 교과서 97면, 『가상 면담을 하며 6월 민주 항쟁의 의미 알아 보기』, 사진설명: “박종철 추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

한민국의 국정교과서인지 의심스럽다.

교과서 속으로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을까

◀ 시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4·19 혁명 당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도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수송국민학교 전한승 어린이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에게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22)

심히 편향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정교과서로서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남을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2) 같은 교과서 86면

탐구 활동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

! 강명희 학생의 시를 읽고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써 봅시다.

나는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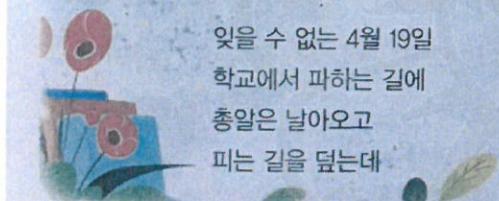
수송국민학교(현 서울수송초등학교) 강명희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 오며는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피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23)

2) 4.19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 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 나갔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이승만 정부 전 기간에 대한 평가를 ‘독재’와 ‘부정부패’ 정부로 간주하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독재정치’로, 덧붙여 부정부패 정부로 매도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²⁴⁾에 입각한 기

23) 같은 교과서 87면,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국립 4·19 민주 묘지에 있는 기념관에서 4·19 혁명과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아버지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소영이는 4·19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졌다.

● 혁명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25)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 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 나갔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 선거를 계획했다. 이에 대항해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 선거를 실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이겼다(3·15 부정 선거, 1960년).

●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선거.

26)

24) 그러한 주관적인 평가도 어떤 근거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문헌에 입각한지도 불명확하고 알 수가 없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의 기술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서 교육과정의 적용, 집필진, 감수진 등 구성, 교육부의 관여 등 국정교과서 작성, 발행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25) 같은 교과서 82면



술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주관적인 역사관의 입장에서 국정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3)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단원에서, 5.16과 박정희 대통령정부와 유신을 연결 지워서 기술하고 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 국정교과서에 담을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헌법 개정의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주체를 ‘박정희’로 두어 마치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었다는 표현을 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같은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이고 편향된 입장에서 기술된 고의적인 기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이러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로서 명백한 오류다.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기술 역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26) 같은 교과서 83면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4·19 혁명 이후 국민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5·16 군사 정변, 1961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10월에는 헌법을 또 바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유신 헌법, 1972년).

● 군사 정변(쿠데타)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행위.

●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

● 간선제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에게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 제도.

27)

(3) 제3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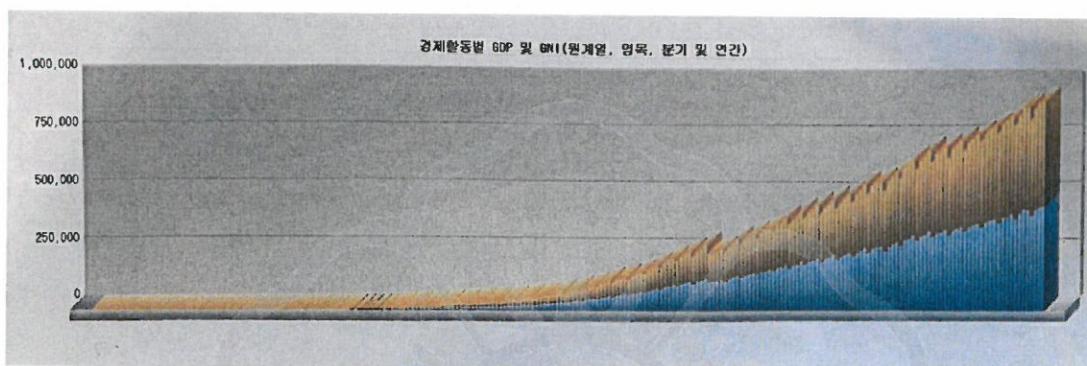
이장의 기술에는 정치발전의 장과 전혀 달리 어느 정부의 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실명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발전과정, 경제계획과 실현,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발전과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 변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특기할 것은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 비교표를 작성함에 있어, 현재 기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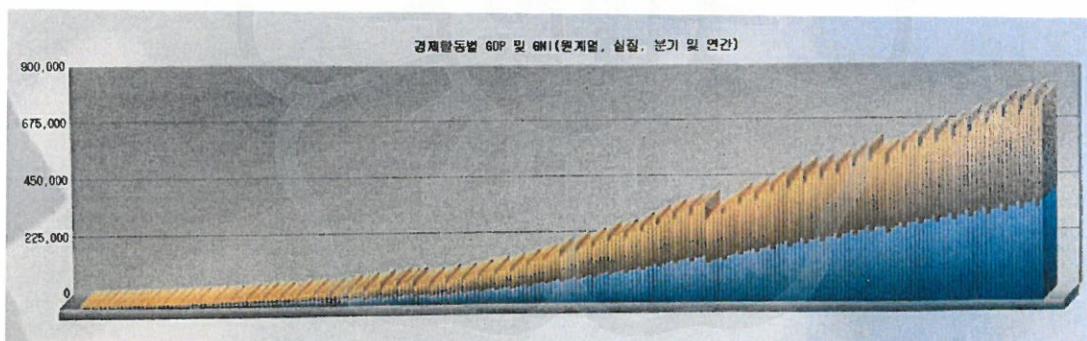
27) 같은 교과서 88면

명목가치로 단순비교하고 있다. 통계적 측면과 실제 성장의 정확하고 올바른 비교,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입장에서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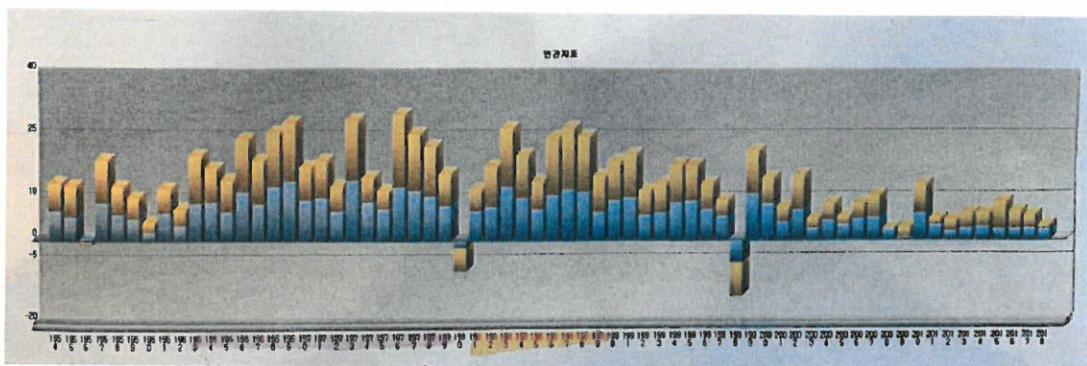
(■ 국내총생산 ■ 국민총소득)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생산과 총소득(1953-2018)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과 총소득(1953-2018)



우리나라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실질성장률(1953-2018)²⁸⁾

1962년에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 시설, 발전소, 고속 국도, 항만 등을 많이 건설했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내려 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 발전을 하려고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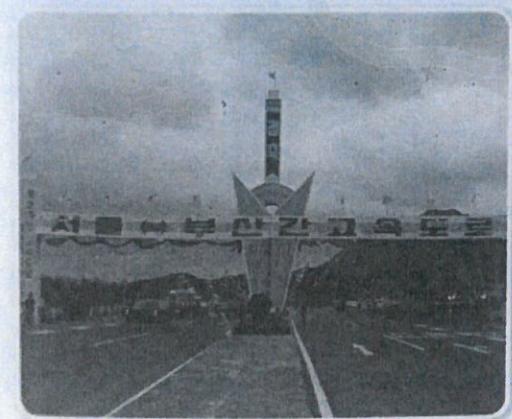


④ 울산 정유 공장 건설



④ 춘천 수력 발전소 공사

● 정유: 석유를 원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깨끗하게 하는 것.



④ 경부 고속 국도 개통



④ 인천 항만 개발

● 항만: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등을 만든 곳.

28) 이상 통계청 통계에 의한 것임.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1973년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학 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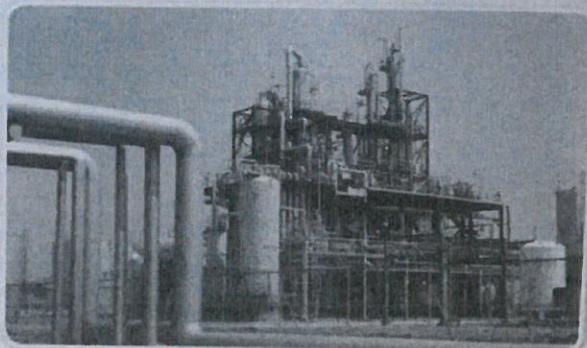
중화학 공업은 경공업보다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 시설과 연구소 등을 설립했으며, 기업에 돈을 빌려줘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④ 중화학 공업

철, 배, 자동차 등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제품, 화학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④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 준공식



④ 울산 석유 화학 단지 건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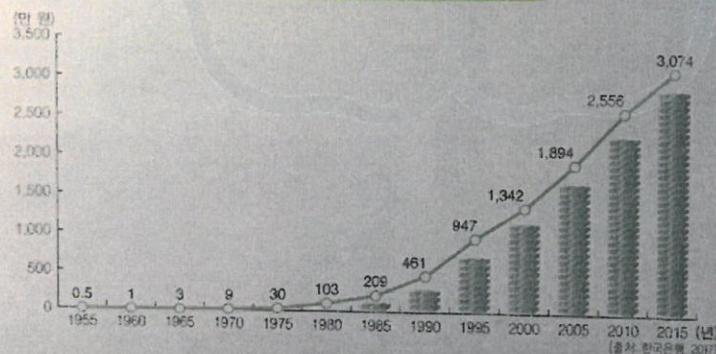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 합한 것.

- ☞ 위의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인가요?
- ☞ 그래프의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 ☞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어떻게 변했나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



● 1인당 국민 총소득: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것.

- ☞ 1975년 이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 ☞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 ☞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연구진

- * 한준희 (부산교육대학교)
- 공석구 (한밭대학교)
- 김대식 (성균관대학교)
-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 김정호 (서울 서울영창초등학교)
- 문종국 (전 서울 서울영풍초등학교)
- 박남수 (대구대학교)
- 박동률 (서울 서울신임초등학교)
- 온지웅 (춘천교육대학교)
- 이간용 (공주교육대학교)
- 이정희 (광주교육대학교)
- 전종한 (경인교육대학교)
- 한동균 (서울교육대학교)
- 김주현 (교육부)

• 표시는 연구 집필 책임자임.

집필진

| 1단원 | 2단원 | 3단원 |
|-------------------|------------------------|----------------------|
| * 허영훈 (경기 현매초등학교) | * 이범기 (서울 서울효제초등학교) | * 김정호 (서울 서울영창초등학교) |
| 김호정 (경기 능원초등학교) | 배진숙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 구본정 (부산 금창초등학교) |
| 석병배 (경기 인창초등학교) | 배한무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 김경동 (서울 서울정곡초등학교) |
| 안호빈 (부산 송정초등학교) | 석병배 (경기 인창초등학교) | 김준혁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
| 윤용한 (경기 고정초등학교) | 안영식 (대구 대구진월초등학교) | 민자원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
| 이봉글 (경기 영동초등학교) | 이경윤 (서울 서울목현초등학교) | 배경호 (부산 금창초등학교) |
| 이승조 (전남 동명초등학교) | 장혁준 (대구 대구달서초등학교) | 이주화 (대전 산내초등학교) |

• 표시는 집필 책임자임.

검토진

| 1단원 | 2단원 | 3단원 |
|--------------------|-------------------|-------------------|
| 강미애 (세종 증촌초등학교) | 김옹현 (서울 서울운중초등학교) | 임우재 (서울 서울증계초등학교) |
| 곽혜송 (서울 서울송진초등학교) | 김은영 (부산 빙여초등학교) | 정선숙 (서울 서울진관초등학교) |
| 권의신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김정이 (서울 서울교동초등학교) | 한성신 (서울 서울시내초등학교) |
| 김명지 (부산 연신초등학교) | 민부자 (서울 서울승천초등학교) | 함정식 (서울 서울송천초등학교) |
| 김선자 (서울 서울암구정초등학교) | 신준섭 (경기 금암초등학교) | |

• 표시는 심의회 위원장임.

심의진

| 1단원 | 2단원 | 3단원 |
|-------------------|--------------------|-------------------|
| * 남경희 (전 서울교육대학교) | 송하인 (광주 수원초등학교) |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
| 강종훈 (대구가톨릭대학교) | 윤준기 (경기동두천임주교육지원청) | 정호범 (진주교육대학교) |
| 강희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 이미미 (홍익대학교) | 최종임 (경기 판곡초등학교) |
| 김다원 (광주교육대학교) | 이승미 (서울 서울월계초등학교) | 홍미화 (춘천교육대학교) |
| 김수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이준혁 (서울 서울독산초등학교) | 황은영 (서울 서울영본초등학교) |
| 김진선 (경기 슬기초등학교) | 임미연 (대전 대전동도초등학교) | |
| 박상준 (전주교육대학교) | 임영태 (세종 한결초등학교) | |

• 표시는 심의회 위원장임.

감수진

| 1단원 | 2단원 | 3단원 |
|-----------------|--------------|--------------|
| 고지수 (성균관대학교) | 박재우 (성균관대학교) | 조성산 (성균관대학교) |
| 박귀문 (부산 달산초등학교) | 오재연 (성균관대학교) | 한봉식 (성균관대학교) |
| 박은종 (충남 광석초등학교) | 임경석 (성균관대학교) | |

발행 협조

| 1단원 | 2단원 | 3단원 |
|---|-----------------------|----------------|
| 편집 (주)지학사 김지일 서인정 김미나 임지연 김예리 윤수현 김주연 황소현 | 편찬자 부산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 발행사·인쇄사 (주)지학사 |
| 디자인 (주)지학사 김의수 김소민 이윤정 김혜령 송은용 이현경 김보은 | | |
| 삽화 (주)지학사 강주연 김현민 배정식 이인아 정현숙 한동훈 한주령 | | |
| 사진 (주)지학사 | | |

국립국어원 어문 규범 감수

2019년 3월 1일 초판 발행
저작권자 교육부
편찬자 부산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발행사·인쇄사 (주)지학사

• 저작물 보상금 지급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http://www.kora.kr>)
• 교과서 관련 문의 사항 교과서市民원바로처리센터(1566-8572, <http://www.lexbook114.com>)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 및 부록 다운로드 에듀넷·디-클라우드(<http://www.edunet.net>) > 디지털교과서
앱스토어(iOS),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디지털교과서 2018"로 검색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출판사: 1544-0019

(4) 교과서 발행의 절차적 문제점

국정교과서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1 사회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예고한 다음, 개편할 교과서 내용에 대하여 1학기 이상 충분한 현장실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편찬에는 그 현장실험을 한 바가 없었다.

또한 이 국정교과서를 개정하여 편찬함에 있어, 집필진은 모두 현재 초등학교 재직중인 교사 2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연구진·심의진·감수진 어디에도 헌법학(또는 법학)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감수진 8명 중 6명이 특정한 대학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국정교과서 발행의 절차상의 하자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³¹⁾

(5) 소결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해손할 위험성이 있고,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결론

31)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추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 6-1 사회과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9년 2학기에 초등학교 5-2 사회과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본안사건의 교육부고시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육부 발행의 국정교과서의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일반적 인격발현권,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 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았고,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해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객관적 헌법질서유지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해손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부칙 제1항의 효력정지를 명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위 교육부고시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발행한 위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바, 그 해당부분의 사용을 중지하고, 또한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 5-2학기 사회과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그 교육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과규율을 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관한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부칙 제2항은 2020. 3. 1.부터 시행되어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그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도에 중학교 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편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교육과정의 시행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집필기준 제시, 심사 등의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그 부칙의 효력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종국결정시까지 정지를 명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들이 인용되더라도 개정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신청인들의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어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신청인들의 주권, 기본권과 국가의 정체성 및 자유민주주의의 등은 일단 침해, 해손되면 나중에 본

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양자를 비교형량 해 보면 후자의 불이익이 훨씬 큼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들은 모두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첨 부 서 류

1. 교육부 2019. 3. 1. 발행,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 책자로 제출하겠습니다.)

2019. 6. 26.

| | | | | | |
|------|-----|-----|---|---|---|
| 신청인들 | 대리인 | 변호사 | 구 | 상 | 진 |
| | | 변호사 | 정 | 기 | 승 |
| | | 변호사 | 이 | 종 | 순 |
| | | 변호사 | 김 | 오 | 섭 |
| | | 변호사 | 김 | 정 | 술 |
| | | 변호사 | 민 | 병 | 국 |
| | | 변호사 | 정 | 지 | 형 |
| | | 변호사 | 배 | 보 | 윤 |
| | | 변호사 | 채 | 명 | 성 |
| | | 변호사 | 이 | | 민 |
| | | 변호사 | 서 | 석 | 구 |
| | | 변호사 | 전 | 창 | 렬 |
| | | 변호사 | 김 | 기 | 천 |
| | | 변호사 | 이 | 상 | 철 |



| | | | |
|-----|---|---|---|
| 변호사 | 김 | 태 | 훈 |
| 변호사 | 석 | 동 | 현 |
| 변호사 | 이 | | 현 |
| 변호사 | 이 | 문 | 재 |
| 변호사 | 이 | 재 | 원 |
| 변호사 | 양 | 윤 | 숙 |
| 변호사 | 박 | 주 | 현 |
| 변호사 | 우 | 인 | 식 |
| 변호사 | 정 | 선 | 미 |
| 변호사 | 이 | 동 | 찬 |
| 변호사 | 고 | 용 | 준 |
| 변호사 | 최 | 유 | 미 |

헌법재판소 귀중